

-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[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]

2024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주차관리과]

# 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주차관리과장

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3개소 기부채납을 위한 「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두류동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인근의 공영주차장 3개소를 기부채납 받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,
- 사업부지 인근은 우리 구 관내 대표적인 주택·원룸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을 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□ 다음은 취득대상 현황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토지 3필지, 대지면적 합계 629.3m<sup>2</sup>이며 주차면수는 총 22면입니다.
-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, 공사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은 두류동 지역 주택조합에서 부담했으며 총 소요비용은 30억원 정도였으나,
-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근거법령에 따른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므로 계획 상 금액은 순수 공사비를 포함한 토지 10억원 정도와 상록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(파고라 2EA), 운동기구(3EA) 4천4백만원입니다.

**이어서 기대효과입니다**

-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 조건에 포함되어 추진된 주차장 조성 및 기부채납 절차이나 도심 내 대표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
-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기부채납건은 주택 및 원룸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**감사합니다.**

#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00924124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11. 6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
(주차관리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두류역 서한포레스트(두류동 138-2번지 일원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고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원룸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추진배경

- 두류동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(승인권자: 대구시)
-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

### 나. 추진경과

- 2021. 4월: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승인 고시
- 2023. 7.~2024. 3월: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협의(區↔조합)
- 2024. 6.~10월: 부지정리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(조합), 최종 점검(區)

### 다. 취득대상 현황

(단위: m<sup>2</sup>, EA, 백만원)

구분			2024년			합계			비고
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
취 득	기부채납	토지 (주차장)	3	629.3	1,041	3	629.3	1,041	공시지가 및 순공사비 반영
		기타	5	-	44	5	-	44	

라. 향후계획

- 2024. 11.~12월: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
- 2024. 12월: 공영주차장 기부채납
- 2025. 1월: 주차장 개장(예정)

**3. 관련법령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- 붙임 1.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.  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.  
3. 관련 법규 1부. 끝.

##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<sup>2</sup>, EA, 백만원)

구 분			2024년			합 계			비 고
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
취 득	기부채납	토지 (주차장)	3	629.3	1,041	3	629.3	1,041	공시지가 및 순공사비 반영
		기타	5	-	44	5	-	44	

##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<sup>2</sup>, EA, 백만원)

연번	재 산 표 시	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
	구분	지목	소재지(지번)	면적				
			계	629.3	862			
1	토지	대	두류동 120-1	251.4	361	2024	기부채납	두류동 지역주택조합 소유  ※ 공사비 제외 공시지가 반영
			두류동 141-11	195.0	238			
			두류동 143-13	182.9	219			
2	기타 (휴게시설, 운동기구)	-	-	-	44			상록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(3EA), 휴게시설(2EA)

**붙임 2**

**위치도 및 현장 사진**



○ 두류1·2동 5공영  
(9면)



○ 두류1·2동 6공영  
(7면)



○ 두류1·2동 7공영  
(6면)

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**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**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**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**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